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우형찬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1952호

다. 제출일자 : 2020. 10. 16.

라. 회부일자 : 2020. 10. 26.

2. 주 문

- 「도로교통법」에서는 전용차로 종류와 해당 전용차로 통행차량과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전용차로 현황 및 주변도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용차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등과 협의하여 일정구간, 특정차량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함

3. 제안이유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등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전용차로별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용차로의 구간, 통행량, 주변도로 교통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용차로 설치시에는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등과 협의하여 전용차로를 설치하였으나 효율적인 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통행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의 통행에 대해서는 협의가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시장등은 도로여건과 교통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전용차로 운영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등과 협의하여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과 통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나. 기타사항 :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동의

5.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 경찰청, 서울특별시

6.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도로교통법」에서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 등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여건 및 도로의 특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용차로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장등이 필요시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현행 「도로교통법」 제15조1)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1)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 등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에 전용차로(이하 “버스 전용차로”라고 함²⁾)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³⁾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 버스 전용차로의 경우 전용차로 설치권자이자 해당도로 관리권자인 시장 등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용차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임
- 한편, 현행 법에서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로 구분하여 전용차로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경찰청장,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시장등이 설치토록 하고 해당 차로로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말함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1〕4)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5)’의 경우〔별표1〕비고2에서 시장등이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와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지자체 및 도로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4)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1〕**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버스 전용차로 2.~3. (생략)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 이하 생략 -

비고

1. 생략
2. 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시장등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가능 구간,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생략
- 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란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한남대교 남단 도로를 말함(경찰청 교통기획계 내부자료)

- 아울러, 동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 따라 시장등이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 도로⁶⁾에서 지방경찰청장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체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 및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확보, 혼잡완화 및 교통흐름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규정한 것은 운전자들의 전용차로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등의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 및 운영체계가 달라질 경우 운전자 혼란 및 사고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관련 기관, 교통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도로교통법」에 의거 고속도로 외의 도로를 말함